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044호
2. 발 의 자 : 노승재 의원
3. 발의일자 : 2019. 10. 10.
4. 회부일자 : 2019. 10. 22.

II . 제안이유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봉사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을 서울시교육감 지침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서울시교육청조례로 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III .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립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2. 위원회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5조).
3.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4. 회의의 소집 및 개최, 의결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9조).
5. 교육감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 「초·중등교육법」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타사항 : 조례안 참조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10월 10일 노승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044호로 발의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봉사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난 2018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는 11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봉사 문화 참여, 자원봉사 인프라,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국제 교류·협력 등 5대 정책영역을 포함한 “자원봉사 진흥 제3차 국가 기본계획(’18~’22)”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학생 진로 맞춤형 봉사, 지역사회 연계 봉사 등 다양한 활동 모델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학생 중심 봉사활동 운영과 실적관리를 통한 학생들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학생 선택 중심의 맞춤형 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단위학교 중심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 2019.2.)”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특히, 단위학교에서 운영되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봉사활동 인정 기관 지정 및 인정 기준시간 조정,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 여부, 지역과 연계한 봉사활동 운영 등 봉사활동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봉사활동 지침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구성 인원을 학교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을 학교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¹⁾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운영에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봉사활동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구성체계

1)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 2019.2.)]
- 교감(위원장), 봉사활동 업무담당 부장(부위원장), 위원(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두며 인원은 학교 실정에 따름.
- 학교 실정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에 봉사활동 업무 담당교사, 봉사활동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인사 등을 참여시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동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등 총칙 규정을,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명칭, 기능,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자원봉사 교육, 협력 체계 구축,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안 제5조는 위원회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의 수립, 지원 및 평가, 학생의 교육 및 교사의 연수, 유관기관과의 협력,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의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과 제5호의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는 학생 봉사활동의 실적 인정, 실적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봉사활동의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봉사활동의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표1] 봉사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학교급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비고
초	1~3	5시간 이상	
	4~6	10시간 이상	
중		15시간 이상	입시총점(300점)의 4%, 학년당 4점 배정
고		20시간 이상	

- 이 밖에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
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407, 2019.11.18.).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약칭: 자원봉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기본 방향)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党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